【붙임2】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질의응답

Q1 **의약단체 주도의 「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」이란 무엇인가요?**

A1

· 착오 또는 산정기준 위반 등 청구항목에 대해 **의약단체**가 **주도적**으로 **'사전예방활동** (제도홍보와 급여기준 교육 등)'을 실시하여, **요양기관 스스로 점검**하고 **청구행태 개선**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Q2 **「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」은 「자율점검제」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?**

A2

· **「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」**은 대상항목을 **의약단체에 사전공지** 및 **관련정보**를 **제공**하면, **의약단체**가 **주도적**으로 교육.홍보하여 **요양기관 스스로 청구행태 개선**하는 사업이며,

· **「자율점검제」**는 심평원이 착오청구 가능성 인지 후 **개별 요양기관에 소명명단 통보**하면, 요양기관 **스스로 확인·점검** 후 부당금액 반납시 **부당금액만 환수** 및 **현지조사·행정처분 면제**하여 **자율적 청구행태 개선**을 **유도**하는 제도입니다.

Q3 **시범사업 및 시범사업 대상항목을 인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**

A3

· 의약단체의 사전예방활동으로 동 제도 및 대상항목을 인지한 경우에는

- 요양급여비용을 **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**, **실제 실시한 행위와 청구내역이 동일한지 등**을 기관에서 **스스로 점검**하고,
- 사업 시행일 **이후 청구 분**에 대해서는 **올바르게 청구** 하시면 됩니다.

Q4 **물리치료 일시처방으로 의사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 후에는 '진찰료'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**

A4

· 관련 급여기준에는 **물리치료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**하여 내원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**물리치료 등을 시술받은 경우**에는 **'AA222'**(소정점수 49.09점)를 **산정**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* 예시) (ㅁㅁ의원) 경추통 등 상병으로 외래에 3일 내원하여 내원 첫날 의사의 진료에 의해 3일간 물리치료 처방 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, 외래 둘째 날부터 의사의 대면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시행

구분	착오청구			올바른 청구		
	첫째날	둘째날	셋째날	첫째날	둘째날	셋째날
수가코드	AA254	AA254	AA254	AA254	AA222	AA222
단가(원)*	12,590	12,590	12,590	12,590	4,590	4,590

Q5 **요양급여비용 청구분 중 착오 청구가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?**

A5

· 요양급여비용 청구분 중 착오청구가 확인되어 자진신고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언제든지 **자진신고* 가능**하며,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*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(고시 제2022-198호.)에 따라, 해당 신고내용에 한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면제